

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2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1. 10.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의 자의적 판단기준을 투명하게 구체화 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원묘지 사용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

☐ 주요골자

가. 묘지사용허가의 취소요건중 행정의 자의적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"법령,조례 기타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"를 "분묘 및 부대시설변경이 관계법령에 저촉될 때"로 규정(안제4조 제5호)

나. 비석의 설치시 사망자의 성명은 의무적으로 표기하되 가족의 성명을 자율에 의하도록 함(안제7조 제1항)

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5.분묘 및 부대시설이 관계법령에 저촉될 때

제7조제1항중 "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기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"를 "사망자의 성명을 표기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"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②"분묘의 형태와 구조는 모델을 개발하여 권장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소관 실·과·소		사회복지과 ☎940-4421
입안자	사회복지과장	이 평 자
	청소년담당	김 석 문
	담 당 자	이 명 레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사용허가의 취소)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.	제4조(사용허가의 취소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였을 때	-----
2.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	-----
3.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	-----
4.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	-----
5. 법령, 조례 기타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	5. 분묘 및 부대시설이 관계법령에 저촉될 때
제7조(분묘의 설치등) ①공원묘지안에서의 분묘는 시장이 지정한 형태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기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.	제7조(분묘의 설치등) ①----- 사망자의 표기는 의무화하되 가족의 성명은 자율에 의한다. -----
②분묘의 형태 및 구조와 비석의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	②분묘의 형태와 구조는 모델을 개발하여 권장한다.
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묘의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수 있다	③----- ----- ----- ---